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 상한액 상향 조정〉

■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682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 사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 상한액 상향 조정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춘생 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6. 9.
3. 회 부 일 : 2025. 6. 10.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형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 외에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천만 원이라는 상한액은 법 제정 당시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의 경제 수준이나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공권력의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본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형 집행에 따른 추가 보상액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Ⅲ. 검토의견 : 사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 상한액 상향 조정

- 개정안은 사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보상의 내용) ① · ② (생략)	제5조(보상의 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u>3천만원</u>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③ ----- ----- ----- <u>7천만원</u> ----- ----- ----- ----- ----- ----- -----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사형이 집행된 후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고, 재심 또는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¹⁾, 사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상속인에게²⁾ 3천만원 이내에서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요건)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고,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현행법에 따라 사형 집행 이후 무죄가 확정된 경우 지급되는 보상은

① 사형 집행 자체에 대한 형사보상금, ② 사형 집행 전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③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증명 가능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사형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은 연도별 최저임금에 연동된 일당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⁴⁾,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은 실손 산정 방식에 따르는 반면, 사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만 정액 상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물가 변동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 특히 사형 집행에 대한 현행 형사보상금 상한액 3천만원은 1981년에 설정된 이후 약 40여 년간 조정되지 않았고, 과거 상한액이 여러 차례 조정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⁵⁾, 현행 상한액은 사회적·

②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조봉암 유족에 대한 형사보상금 : 1억 2,700만원

미결구금 보상액 (17만 2,800원 × 565일) + 사형 집행 보상액 (3,000만원) = 1억 2,700만원

[경향신문, “조봉암 유족에 1억 2,700만원 형사보상금”, 2011. 3. 23.

(<https://www.khan.co.kr/article/201103232136305>)]

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5) <사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 상한액 변경 경과>

연도	사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 상한액
1959년(법률 제494호)	5백만원*
1967년(법률 제1868호)	2백만원
1975년(법률 제2787호)	5백만원
1981년(법률 제3465호)	3천만원

*500만원 = 50만원(1962년 환→원 전환 기준, 10환 = 1원)

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가장 중대한 형벌로서, 사형 집행 이후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 그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사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유족에 대한 예우, 국가의 책임 인정, 향후 오판 방지라는 관점에서 국가 재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사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수준의 현실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이 정한 사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 상한액 7천만원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물가 수준의 변화와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 현행 상한액이 설정된 1981년의 3천만원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26년 1분기 물가 기준으로 약 1억 4천9백만원 수준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⁶⁾,
- 우리 나라와 유사한 형사보상체계를 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 사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 상한을 3,000만엔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6) 1981년 1분기(0.239)와 2026년 1분기(1.1841)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서로 비교해 보면, 1981년의 3,000만원은 2026년 1분기 물가 기준으로 약 1억 4,900만원 수준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30,000,000\text{원} \times (1.1841 \div 0.239) = 148,631,799\text{원}$

이를 현재의 엔/원 환율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2억 8천만원 수준에 해당하는 점⁷⁾⁸⁾,

- 해당 금액은 상한액으로서 실제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은 법원이 개별 사안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7천만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상한액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음.

- 한편,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되는 권리로서, 형사보상의 구체적 내용과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가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형사보상은 국가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음⁹⁾.

7) 1엔(JPY) ≒ 9.49원(KRW)(2026. 7. 3. 기준), 3,000만엔 × 9.49원 = 284,700,000원

8) 「刑事補償法」 第四条

3 死刑の執行による補償においては、三千万円以内で裁判所の相当と認める額の補償金を交付する。ただし、本人の死亡によつて生じた財産上の損失額が証明された場合には、補償金の額は、その損失額に三千万円を加算した額の範囲内とする。

일본 「형사보상법」 제4조제3항 사형 집행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는 3천만엔 이내에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교부한다. 다만,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금의 금액은 그 손실액에 3천만엔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 내로 한다.

9)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8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되므로 그 내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데, 형사보상의 구체적 내용과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가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 사건 보상금조항 및 이 사건 보상금 시행령조항은 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형사보상은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는 그 취지 자체가 상이하므로 형사보상절차로서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보상금액의 구체화·개별화를 추구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하는데 상당한 기간의 소요 및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여 형사보상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형사보상금의 액수에 지나친 차등이 발생하여 오히려 공평의 관념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 사건 보상금조항 및 이 사건 보상금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 종합하면, 개정안에 따른 사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 상한액 7천만원은 현행 상한액 3천만원 보다는 현실화된 조치로서 입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물가 변동과 생명권 박탈이라는 피해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065